



<2023년 변경되는 주요내용>

1. 최저임금 인상

기 존	2023년 시행
- 시급 : 9,160원 - 월급 1,914,440원 : 1일8시간, 1주40시간 기준	- 시급 : 9,620원 - 월급 2,010,580원 : 1일8시간, 1주40시간 기준

2. 비과세 식대 한도상향

기 존	2023년 시행
- 식대 : 한도 10만원	- 식대: 한도 20만원

※ 식대 200,000원 줄 경우 최저임금 월 2,030,686원(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)

3. 최저임금 산입 범위확대

기 존	2023년 시행
- 월지급 상여금 : 최저월급의 10% 초과분	- 월지급 상여금 : 최저월급의 5% 초과분
- 복리후생비(식비,교통비 등) : 최저월급의 2% 초과분	- 복리후생비(식비,교통비 등) : 최저월급의 1% 초과분

※ 최저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개인별 월 급여 (예: 1주40시간, 2,010,580원, 2023년 기준)

4. 건강보험료 6.99% 에서 7.09%로 인상

기 존	2023년 시행
- 건강보험 6.99% - 장기요양요율 : 건강보험료의 12.27%	- 건강보험료율 : 7.09% - 장기요양요율 : 건강보험료의 12.81%

5. 추가연장근로(8시간) 서면합의제도 종료

기 존	2023년 시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주8시간 특별연장근로 가능 (서면합의) - 1주 최대 근로시간: 40시간(소정) + 12시간(연장) + 8시간(추가연장) = 60시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서면합의제도 사용불가 - 1주 최대 근로시간: 40시간(소정) + 12시간(연장) = 52시간

6. 석가탄신일 ·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

기 존	2023년 시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공휴일 적용대상: 설 · 추석연휴, 3·1절, 어린이날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: 설 · 추석연휴, 3·1절, 어린이날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, 석가탄신일, 성탄절

7. 외국인 근로자(H-2, E-9) 고용보험 적용확대

기 존	2023년 시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(실업급여 외 의무가입) -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

8.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(30인 이상 사업장)

기 존	2023년 시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등록시 근로자 10인의 추천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자 10인의 추천없이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이면 누구나 근로자위원 입후보 가능 - 근로자위원 투표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